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97
----------	------

2025.1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제출자: 2025. 11. 10.(월) 광양시장

나. 회부일: 2025. 11. 10.(월)

다. 상정일: 2025. 12. 5.(금)

-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감독, 정산 등 산림사업 전 과정을 산림전문기관이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양시는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일부 산림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일부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에 대해 관리업무대행 추진

3.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제342회 임시회(1개월 전)에서 부결된 후, 부결 당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결 이후 1개월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등 충분한 사정 변경 없이 동일 내용으로 재상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재상정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안건 자체의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리업무대행 개요

- 사업명: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민간위탁)
- 위치: 관내 산림 일원
- 규모: 3개 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 대행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관단체 중 공모절차를 거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 대행기간: 2026. 1. ~ 2027. 12. (2년간)
- 2026년 대행사업비: 4,155백만원(국비 2,371, 도비 511 시비 1,273)
 - 조림 576, 숲가꾸기 1,405, 산림병해충 2,174
- ※ 사업비는 매년 사업 규모 및 국도비 예산 교부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대행 수수료: 사업 정산 후 예산(대행사업비)의 범위에서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

2.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

○ 근거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

❖ 제25조의5(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 법체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 일부 발췌정리

○ (의의)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임

*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기능)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게 됨

* 위임, 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임

○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행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됨

*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업무의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

1.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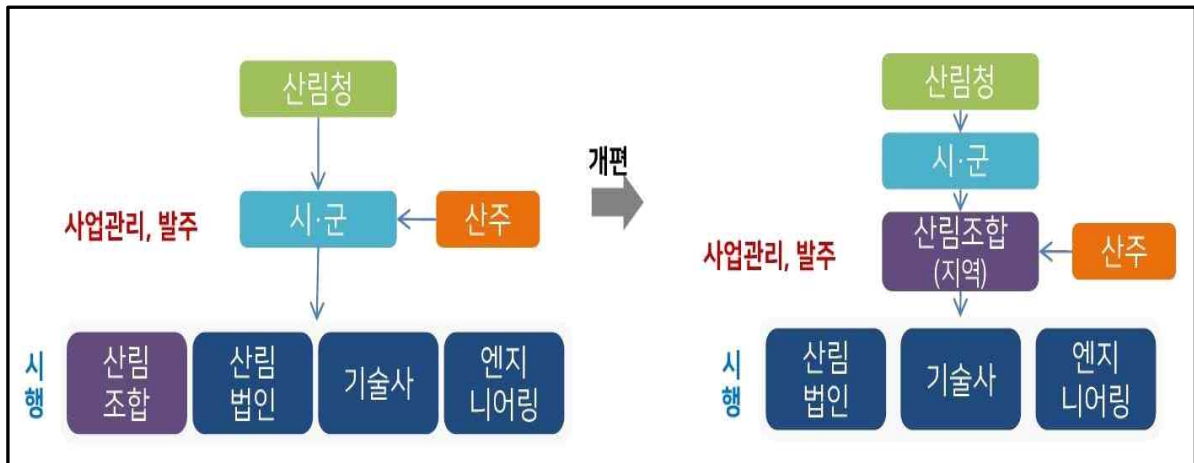
- 사업명: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사업기간: 2026. 1. ~ 2028. 12. (3년간)
- 위치: 관내 산림 일원
- 사업대상: 3개 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 사업량: 3,056ha(조림 91, 숲가꾸기 545, 산림병해충 2,420)
- 사업비: 4,155백만원(국비 2,371^{57%}, 도비 511^{12%}, 시비 1,273^{31%})
 - 조림 576, 숲가꾸기 1,405, 산림병해충 2,174
 - * 위탁비는 2026년도 국도비사업 가내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익림기능증진, 조림지 유지관리,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친환경 밤나무 항공방제
- 연간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4년	2023년	비고
합계	10,468	3,454	3,911	3,103	
조림	1,405	336	441	628	
숲가꾸기	4,288	1,424	1,844	1,020	
병해충	4,775	1,694	1,626	1,455	

2. 운영배경 및 개요

- 운영배경: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 인력 부족, 산림사업 시기성, 산주 동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유림 경영 활성화 장애요인 지속 발생
- 운영목적: 대행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 위탁사업 운영 추진 체계(예시)



구 분		주요 업무
지자체	광 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위탁비) 배정 • 대행사 지도 감독 및 위탁사업 총괄 준공 등
대행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 사전 행정절차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등 사전 협의 • 사업계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 발주* 및 계약, 사업 공사 감독 및 준공 처리 * 단위사업 발주는 설계, 시공, 감리를 말하며 공개경쟁입찰 원칙이며, 위탁대행자는 직접 사업 시행 배제 • 사업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청구, 사업장 사후관리 및 수수료 최종 정산 - 대행자는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산림사업인	관내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작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시공 및 감리를 대행자와 계약 후 직접 시행

3. 대행자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11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은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 추천자 등과 담당 공무원 중간사 1인으로 구성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 심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선정기관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 마련

○ 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 산림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림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산림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앞으로 추진 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 2025. 12.
- 선정위원회 평가 및 대행자 선정 : 2026. 1.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 2026. 2.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시행 : 2026. 2.

5. 관리업무대행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법적·제도적 근거 적정성

- 「지방자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관리업무대행(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현장 중심 업무 추진으로 사업 품질과 효율성 향상

- 산림사업은 대상지가 대부분 임야로 면적 또한 방대하여 사업담당자의 현장 관리 출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대부분 개인소유의 사유림으로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전문법인에 위탁 시 장비·기술·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속도 및 사업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인(산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공공성·투명성 확보

- 관리업무대행자는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실무 매뉴얼」에 따르므로 공정한 선정 절차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
-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검증, 준공 또한 지자체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신뢰성 제고
- 관내 산림을 지속가능 하도록 관리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

산림사업의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 확립

- 사업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주기적(월, 분기, 연)인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행 사무의 관리 및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